

부산광역시체육회
경기지도보조금 지원 규정

● 부산광역시체육회 경기지도보조금 지원 규정

제정	2016년	6월	15일
개정	2016년	12월	16일
개정	2017년	12월	21일
개정	2019년	1월	29일
개정	2019년	10월	30일
개정	2020년	1월	22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경기지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기지도자(이하 “경기지도자”)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경기지도보조금이라 함은 경기지도자에게 매월 일정하게 지급하는 수당을 뜻한다.

제3조(적용) 이 규정은 본회에서 경기지도보조금을 지원하는 경기지도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정원) 경기지도보조금을 지원하는 경기지도자의 정원은 본회의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제5조(경기지도자의 선발) ① 경기지도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스포츠지도사)의 규정에 의해 자격을 갖춘 자 중 학교장 또는 부장이 본회 회원종목단체를 경유하여 추천한 자를 본회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선발한다. 단, 본회 회원종목단체로부터 중도교체 및 추가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개정 2019.10.30.>

② 본회 회원종목단체의 경유(추천)는 해당학교로부터 추천 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격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본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결격사유 제시 없이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학교의 추천만으로 본회 경기력향

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9.10.30.>

제5조의2(경기지도보조금 지원의 요건) ① 경기지도보조금을 요청하는 팀은 다음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12.16.>

1. 단체종목의 경우 전국체육대회 부산시 대표자격을 획득한 팀
2. 개인종목의 경우 3년 연속 전국체육대회 부산시 대표선수를 보유한 팀
3. 보조금 지원을 요청하는 팀의 선수 구성원이 명확하고, 연중 내내 상시로 지도할 수 있는 팀 <개정 2016.12.16.>
4. 삭제 <2016.12.16.>

② 단체종목의 경우 복수 팀은 해당 연도 전국체육대회 부산대표로 선발된 팀 지도자에게 지도연구보조금을 지급하고, 지급기간은 전국체육대회 출전 해당 연도 9월 1일부터 익년도 8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12.16.> <개정 2017.12.21.> <개정 2019.01.29.>

제6조(구분) 본회에서 경기지도보조금을 지급하는 지도자는 다음과 같이 경기지도자와 연구지도자로 구분한다.

1. 경기지도자

- 가. 팀 육성을 위하여 선수지도를 하고 있으나 소속팀의 지원이 없거나 미약하여 본회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지도자
- 나. 본회에서 채용하여 4대 사회보험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지도자

2. 연구지도자

- 가. 소속팀에서 채용하여 4대 사회보험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지도자
- 나. 개인사업 및 체육강사 또는 개인교습 등을 통한 별도의 소득이 있는 지도자
- 다. 대학의 시간강사 또는 겸임교수를 겸하고 있는 지도자

제7조(자격기준) 경기지도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경기지도자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격과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1. 국가대표 지도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준 국가대표(상비군, 청소년대표, 주니어대표 등) 지도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전국체육대회에서 지도한 선수가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대표 선수로 국제대회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자
5. 해당종목의 시·도 대표선수로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자
6.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개정 2017.12.21.>
7. 상기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경기지도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선수(성)폭력 및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적절한 행위로 본회 및 타 기관에서 해임된 자(5년간 채용 제한)
3. 해당 종목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자
4. 대한체육회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 규정 제6조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16.12.16.>

제9조(선발취소) 경기지도자가 선발 된 후 본회에 제출한 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구비서류) 경기지도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종목단체에서 경기지도자를 추천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최종학력졸업증명서 1부
4. 채용신체검사서 1부(채용시)
5. 선수경기실적 및 경기지도실적 증명서 및 각1부
6.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 <개정 2017.12.21.>
7. 기타 본회에서 요구하는 서류(채용시)

제11조(경기지도자의 직무) 본회의 경기지도자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투철

하여야 하며, 직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무를 가진다.

1. 선수의 훈련지도 및 관리
2. 선수별 훈련 성과표 작성 비치
3. 훈련계획서 작성
4. 각종대회 참가 및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5. 본회 지시사항 및 경기력 향상과 관련된 제반업무 이행

제12조(계약기간) ① 본회가 경기지도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은 경기지도실적에 따라 연장할 수 있되 매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겸직금지) 본회 경기지도자는 타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자는 지도연구보조금 지도자로 한다.

제14조(지원중단) ① 경기지도자로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선수지도 업무에 태만한 자
2. 경기지도자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이 부족한 자
3.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4. 기타 경기지도자로서 자질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5. 본회가 실시하는 지도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또는 본회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 자
6.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7.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자
8. (성)폭력 및 가혹행위 예방을 위한 상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자

② 경기지도자의 지도실적이 평가 당해 년도부터 최근 3년 동안 극히 부진하거나 다음 각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계약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종목(팀) 지도자에 대한 지원은 경기력향상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결정한다.

1. 전국체육대회 실적이 3년간 100점 미만이거나, 개인종목 육성 선수가 3명 미만인 경우 및 단체종목 참가인원 미확보로 팀 운영이 어려운 경우 <개정 2019.01.29.>
2. 팀 해체, 폐교 등으로 지도 팀이 없어지는 경우
3. 근무성적 평가결과 총점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는 경우 <개정 2019.01.29.>

제15조(신분보장) 본회의 경기지도보조금을 지원받는 지도자는 제14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에는 교체할 수가 없다. 다만, 해당 종목단체장 및 학교장(소속장)이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충분한 사유서를 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경기지도보조금의 지원) ① 경기지도자에게는 경기지도보조금, 4대 사회보험료 및 퇴직금, 상여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1. 경기지도보조금 : 별표 제1의 기준에 의하여 매년 지원한다. <개정 2016.12.16.>
2. 4대 사회보험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은 관련되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퇴직금 :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1년 이상 근무한 지도자에 대하여 연 1개월분의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4. 상여금 : 연2회 추석, 설날에 상여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1회 지급액은 300,000원 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규지원 시 경기지도보조금은 별표 제2의 경기지도자 등급수당 확정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6.12.16.>

③ 연구지도자에게는 훈련보조금 개념의 지도연구보조금을 지급하되 지원 금액은 월1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결정한다. 다만 4대 사회보험료 및 퇴직금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7조(경기지도보조금의 조정) ① 경기지도보조금은 해당 연도 전국체육대회 지도 실적에 따라 별표 제2호(등급수당) 제3호(장기근속수당)의 기준에 의하여 조정한다. <개정 2016.12.16.>

② 등급수당 및 장기근속수당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확정한다. <개정 2016.12.16.>

③ 제11조의 경기지도자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지도자는 승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경기지도보조금이 급여체계 변경에 따라 기존 대비 감액되었을 경우 보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2.16.>

제18조(시행세칙) 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경기력향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결정 시행한다.

부 칙 (2016.06.15.)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2.16.)

이 개정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2017.1.1부터 시행하고 이전에는 현행과 같이 시행한다.

부 칙 (2017.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1.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며, 별표 제1호 기본급여 개정내용은 2019.01.01.부로 적용한다.

부 칙 (2019.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1.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며, 별표 제1호 및 별표 제2호 개정내용은 2020.01.01.부로 적용한다.

[별표 제1호] (제16조 제1항 관련) <개정 2016.12.16.> <개정 2017.12.21.> <개정 2019.01.29.> <개정 2020.01.22.>

경기지도보조금 지원기준

(단위 : 원)

구 분	지급기준(월)	비 고
기 본 금	2,000,000	
근무지내 출장비	140,000	4시간 2만원×7회(월 7회 한도)
정액급식비	110,000	
소 계	2,250,000	

[별표 제2호]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1항 관련) <개정 2016.12.16.> <개정 2020.01.22.>

경기지도자 등급수당 확정기준

등급	등급수당 확정기준	비고
1등급 (75만원)	· 최근 3년간 전국체전 획득점수가 1,500점 이상인 지도자 (재임용시)	국가대표가 없는 종목은 프로경력 으로 대체가능, 신규임용시 확정 등급은 3년간 유효
2등급 (50만원)	· 최근 3년간 전국체전 획득점수가 1,000점 이상인 지도자 (재임용시) · 국가대표(선수·지도자) 경력이 1년 이상이며, 지도경력이 6년 이상인 지도자(신규임용시) ·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개인단체 및 단체종목의 경우 우승 3회 이상, 개인종목의 경우 금메달 6개 이상 획득한 지도실적이 있는 지도자(신규임용시)	
3등급 (25만원)	· 최근 3년간 전국체전 획득점수가 500점 이상인 지도자 (재임용시) · 국가대표(선수·지도자) 경력을 보유하고,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지도자 (신규임용시) ·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개인단체 및 단체종목의 경우 우승 1회 이상, 개인종목의 경우 금메달 3개 이상 획득한 지도실적이 있는 지도자(신규임용시)	

[별표 제3호] (제17조 제1항, 제2항 관련) <개정 2016.12.16.>

경기지도자 장기근속수당 획정기준

(단위 : 원)

근무년수	지급기준(월)	근무년수	지급기준(월)
3년이상~4년미만	50,000	10년이상~11년미만	190,000
4년이상~5년미만	70,000	11년이상~12년미만	210,000
5년이상~6년미만	90,000	12년이상~13년미만	230,000
6년이상~7년미만	110,000	13년이상~14년미만	250,000
7년이상~8년미만	130,000	14년이상~15년미만	270,000
8년이상~9년미만	150,000	15년이상~16년미만	290,000
9년이상~10년미만	170,000	16년이상	310,000